

# KTX특송 약관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KTX특송서비스 사업자와 고객간의 공정한 KTX특송서비스 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KTX특송서비스’라 함은 소형, 소량의 운송물을 KTX 고속열차로 수탁역에서 인도역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KTX특송서비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KTX특송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KTX특송서비스를 위탁하는 자로서 접수증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KTX특송서비스 접수증’(이하 ‘접수증’이라 합니다)이라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KTX특송서비스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 ⑥ ‘전산운송장’(이하 ‘운송장’이라 합니다)이라함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작성한 접수증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바코드 형식으로 출력된 문서를 말합니다.
- ⑦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KTX특송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⑧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 ⑨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그 금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합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KTX특송서비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 1.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 2.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20조 제3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 3.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운임이 있는 경우 운송운임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제4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관계법령(약관포함),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 제2장 운송물의 수탁

### 제5조 (접수증)

-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접수증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2.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3.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4. 손해배상한도액 : 1개당 50만원
  5. 문의처 전화번호
  6.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접수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으로 사업자가 그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1.고객(송하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고객(송하인의)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수하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4.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 제6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

- ① 사업자가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③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기본 운임 및 할증 운임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하여 본 약관의 별표에 게시합니다.

### 제7조 (포장)

- 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 제9조 (운송물의 확인)

- ① 사업자는 접수증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

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접수증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접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포장을 포함한 운송물 1포장(개)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22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80cm를 초과하는 경우
5. 포장을 포함한 운송물 1포장(개) 무게가 30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개)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여객, 객차 기타 타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2.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3.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4. 운송물이 국내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된 물품인 경우
15.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6.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17. 사회통념상 KTX특송서비스를 통한 배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경우

## 제3장 운송물의 인도

### 제11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한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 제13조 (수하인 인도지연에 대한 조치)

-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하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 인도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② 사업자는 수하인이 인도 예정 장소에서 인도예정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상 지연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되 인도예정일 이후 사업자의 보관에 따른 비용은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부담합니다.
- ③ 전항의 경우 수하인이 인도예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 14조 2항 내지 7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운송물의 처분

### 제14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 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 또는 폐기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

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 없이 즉시 경매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 또는 폐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 경매, 폐기, 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 폐기,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 제5장 운송물의 사고

###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제17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 제6장 사업자의 책임

### 제18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 제19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 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제20조 (손해배상)

-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

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접수증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수탁(접수)시점으로부터 인도시점까지 정해진 시간내에 배송이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 지연 배송시간이 30분 이상 경우 : 징수 운임액의 50%

나. 지연 배송시간이 60분 이상 경우 : 징수 운임액의 100%

(단, 운송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음)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함

③ 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의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21조 (사고발생시의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 ②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 합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별표 1)약관 제 6조 관련

□ 기본 운임표

- 경부선·경전선

| 경부선 · 경전선   |                  |       |       |       | (단위:원,VAT포함) |
|---|------------------|-------|-------|-------|--------------|
| 수도권②<br>(행신, 용산)  | 6,000            | 7,000 | 8,000 | 9,000 |              |
|   | 수도권①<br>(서울, 광명) | 7,000 | 7,000 | 8,000 |              |
| 〈충청권〉<br>천안아산, 오송, 대전                                   |                  | 충청권   | 7,000 | 7,000 |              |
| 〈경북권〉<br>김천구미, 동대구, 신경주, 경산                             |                  |       | 경북권   | 7,000 |              |
| 〈경남권〉<br>경부선 : 밀양, 울산, 구포, 부산<br>경전선 : 창원, 창원중앙, 마산, 진주 |                  |       |       | 경남권   |              |

- 호남선·전라선

| 호남선 · 전라선                                  |                  |       |       |       | (단위:원,VAT포함) |
|--|------------------|-------|-------|-------|--------------|
| 수도권④<br>(서울, 행신)                           | 6,000            | 7,000 | 8,000 | 9,000 | 10,000       |
|  | 수도권③<br>(용산, 광명) | 7,000 | 7,000 | 8,000 | 9,000        |
| 〈충청권〉<br>천안아산, 오송, 대전, 계룡, 논산              |                  | 충청권   | 7,000 | 7,000 | 8,000        |
| 〈전북권〉<br>호남선 : 익산, 김제, 정읍,<br>전라선 : 전주, 남원 |                  |       | 전북권   | 7,000 | 7,000        |
| 〈전남권①〉<br>호남선 : 광주, 광주송정, 나주, 목포           |                  |       |       | 전남권①  | 전남권②         |
| 〈전남권②〉<br>전라선 : 곡성, 구례구, 순천, 여천, 여수Expo    |                  |       |       |       |              |

※ 권역내 이동시 기본요금 6,000 적용

□ 크기 및 무게에 따른 할증 운임

| 최장변     | 세변합     | 무게     | 할증율  | 배송운임   |        |        |
|---------|---------|--------|------|--------|--------|--------|
|         |         |        |      | 6,000원 | 7,000원 | 8,000원 |
| 40cm이하  | 100cm이하 | 10kg이하 | 기본요금 | 6,000  | 7,000  | 8,000  |
| 60cm이하  | 120cm이하 | 15kg이하 | 50%  | 9,000  | 10,500 | 12,000 |
| 80cm이하  | 140cm이하 | 20kg이하 | 100% | 12,000 | 14,000 | 16,000 |
| 100cm이하 | 160cm이하 | 25kg이하 | 150% | 15,000 | 17,500 | 20,000 |
| 120cm이하 | 180cm이하 | 30kg이하 | 200% | 18,000 | 21,000 | 24,000 |
| 140cm이하 | 200cm이하 | 30kg이하 | 250% | 21,000 | 24,500 | 28,000 |
| 160cm이하 | 220cm이하 | 30kg이하 | 300% | 24,000 | 28,000 | 32,000 |
| 180cm이하 | 220cm이하 | 30kg이하 | 400% | 30,000 | 35,000 | 40,000 |

- ※ 상기 규격을 벗어나는 물품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최장변의 길이, 가로·세로·높이의 합, 무게 중 가장 높은 할증 비율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운임을 정합니다.

□ 기타 요인에 따른 할증 운임

| 할증 | 이손품 | 부패성 화물 | 귀 중 품   |          |          | 불법배송 |
|----|-----|--------|---------|----------|----------|------|
|    |     |        | 100만원이하 | 2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    | 50% | 50%    | 50%     | 80%      | 100%     | 300% |

- ※ 크기 또는 무게 할증이 적용된 경우에도 기타 요인은 할증 운임이 추가 적용됩니다.
- ※ 파손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귀중품 등은 사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할증운임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요인에 따른 할증 운임 적용대상 품목 내역

| 구 분    | 적용기준 및 주요 품명                                     |
|--------|--|
| 이손품    | 깨지기 쉬운 물품 : 유리병,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류                   |
| 부패성 화물 |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 : 냉동, 냉장육, 김치, 한약, 청과물          |
| 귀중품    | 내품 가격이 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물품                     |
| 불법 배송  | KTX특송서비스를 사칭한 불법 배송, 사업자의 사전 동의없이 KTX를 이용한 무단 배송 |

- ※ 본 약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대량 접수에 따른 운임의 할인

| 1회 접수 수량에 의한 할인 |     | 월 누적 접수 수량에 의한 할인 |     |
|-----------------|-----|-------------------|-----|
| 10개 이상          | 10% | 100개 이상           | 10% |
| 20개 이상          | 20% | 200개 이상           | 20% |

※ 월 누적 수량에 의한 할인은 사업자와 고객간의 별도 계약에 의하며, 할 인율은 전월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50%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 부가 운임

| 포장비  | 도선료  | 하역료  | 비 고                           |
|------|------|------|-------------------------------|
| 실비정산 | 실비정산 | 실비정산 | 지역특성(성)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추가로 받는 운임 |